

● 문답식 상품해설 (Q & A)

Q) 이 상품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.

A)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(2404.7)는 사업장의 주요 재물 및 배상책임 위험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종업원의 각종 상해, 비용 손해 등도 보장하는 통합 재물보험입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) 이 상품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의 목적의 범위는 무엇입니까?

A) 이 상품의 보험의 목적은 화재사고로 인한 손실이 가능한 것이므로 토지나 무형의 영업권, 지적재산권 등은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.

Q) "영위업종적용" 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.

A-1) 화재보험의 보험료 적용방식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으며, 이 상품은 영위업종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.

구분	보험료 적용방식
영위업종 방식	방화구획 내에 각 업종별 적용요율 중 최고요율이 어떤 업종인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본인의 영위업종의 요율을 적용합니다.
요율업종 방식	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설치 등에 의한 위험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하여 각 업종별 적용 요율 중 최고 요율을 건물 전체에 적용하고, 위험구획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위험 구획을 하나의 건물로 하여, 해당업종별 요율을 적용합니다.

A-2)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(2404.7)에서 영위업종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되는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화재손해(영위업종적용) 보통약관
- 붕괴·침강 및 사태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특수건물 풍수재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구내폭발·과열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구내냉동(냉장)물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전기위험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점포휴업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건물(화재) 복구비용지원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시설(화재) 수리비용지원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- 기계(화재) 수리비용지원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

Q) 이 상품에서 지급보험금 계산 시 비례 보상하는 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.

A)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엔안전 파트너(2404.7)의 보장 중 비례 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비례 보상하는 보장은 아래와 같으며, 보장에 따라 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
구분	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미만일 경우 비례보상	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비례보상
해당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본계약 : 화재손해(영위업종적용)(단, 동산 제외), 잔존물제거비용</li> <li>· 특수건물 풍수재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</li> <li>·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</li> <li>· 구내폭발·과열위험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(단, 동산 제외)</li> <li>· 붕괴·침강 및 사태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(단, 동산 제외)</li> <li>·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(영위업종적용)(단, 동산 제외)</li> <li>· 전기위험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본계약 : 화재손해(영위업종적용) 中 동산</li> <li>· 구내폭발·과열위험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 中 동산</li> <li>· 붕괴·침강 및 사태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 中 동산</li> <li>·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 中 동산</li> <li>· 구내냉동(냉장)물손해(영위업종적용) 특별약관</li> </ul>
보험금 계산 방법	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의 80\% 해당액}}$	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}}$

보상방식 선택에 상관 없이 임차자(화재)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.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상한도액}}{\text{보험가액}}$$

Q) 급배수누출손해(자기부담금 10%)(주택물건/일반물건) 특별약관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?

A-1) 급배수누출손해(자기부담금 10%)(주택물건) 특별약관 및 급배수누출손해(자기부담금 10%)(일반물건)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급배수시설의 누수 또는 방수로 입은 직접손해의 90%를 보상합니다.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. 「보험의 목적의 수조,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」 단,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A-2) 급배수누출손해(자기부담금 10%)(주택물건) 특별약관 및 급배수누출손해(자기부담금 10%)(일반물건) 특별약관의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 일이며,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

고 명시한 물건들(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 등)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*Q)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?**

A-1) 네, 있습니다.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. 다만,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
-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
-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
-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
-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

A-2)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'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'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,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.

A-3)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(등기우편 등), 전화(음성녹취)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, 보험료 수준,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.

**Q)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 및 만기유지보너스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**

A-1)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리며, 공시이율의 변경,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(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)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,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,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A-2) 회사는 이 보험이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지 않고,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(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해당일)까지 유지된 경우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을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해 드립니다.

단,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은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실제 납입여부 등에 따라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,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가 중대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만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